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06호
- 나. 발 의 자 : 서윤기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가. 시장과 산하기관 등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적용함으로써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고,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에게 지원하는 범위 등을 구체화해 지원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개발·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나.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단체를 서울특별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2조제1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공정거래 지침에 포함토록 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 사업과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적용 (안 제9조)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2018.10.4.) 하였으나, 실태조사 이외에 실제 지원과 보호 사업은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서울지역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1.5%,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는 31.8%에 그쳤음¹⁾.

1) 서울노동권익센터(2019.11.28.) ,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분야 프리랜서의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제19회 노동인권포럼 자료

- 대부분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보수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 안 제9조 제1항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이 개발·보급하는 공정거래 지침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동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입법 취지임.
- 다만 정부가 2015년부터 보급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한 바, 표준계약서 작성과 보급 의무 적용, 확산 등을 위한 서울시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됨.

다. 지원대상 및 범위 구체화 (안 제12조 제1항)

- 안 제12조 제1항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 각 호를 신설하여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관·단체 지원) ① ----- -----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06 347 790 380"><후단 신설></p> <p data-bbox="654 459 790 492"><신 설></p> <p data-bbox="654 548 790 582"><신 설></p> <p data-bbox="654 638 790 672"><신 설></p> <p data-bbox="654 705 790 739"><신 설></p> <p data-bbox="654 817 790 851"><신 설></p> <p data-bbox="654 929 790 963"><신 설></p> <p data-bbox="199 1052 359 1086">② (생 략)</p>	<p data-bbox="829 347 1420 436">이 경우 지원은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p> <p data-bbox="829 459 1420 492">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p> <p data-bbox="829 515 1420 604">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p> <p data-bbox="829 627 1420 660">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p> <p data-bbox="829 683 1420 772">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p> <p data-bbox="829 806 1420 896">5.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p> <p data-bbox="829 929 1420 1019">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 data-bbox="829 1052 1069 1086">② (현행과 같음)</p>

- 이는 비영리 목적(non-profit)의 공적 과제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국한해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사정에서 선별 지원에 대한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지난 9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2,222개로 이 중 프리랜서를 대변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부 문화예술인 협회나 단체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프리랜서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동아리, 소모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목적 증진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상의 프리랜서 지원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4,103개로 이 중 문화예술 관련 법인만 1,478개에 이룸(2019.10.21.기준).

〈 비영리조직의 구분 〉

구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 지급 학술 자선사업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 목적의 민간단체 지원	비영리 목적(주민권리 복리증진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의 협동조합
설립 요건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좌동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 등록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 한편, 개정안은 프리랜서 지원사업을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정책제언 등으로 명시하였음.
- 이는 조례 제정 시행 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던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모호한 직업적 특성으로 불공정한 처우를 받던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경과되도록 프리랜서 실태조사 외에 특별한 지원 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다만 개정안에서 프리랜서 지원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만 제한하는 것은 비영리영역의 다양성, 확장성 등에 비취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